

소 장

원 고 서울주택도시공사(218-82-*****)(법인등록번호:111171-0007324)
서울 강남구 개포로 621 (개포동)
대표자 사장 김헌동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7, 7,8,11,12,13,15,16층(역삼동, 동훈타워)
담당변호사: 김태경, 남동환, 오현정
(전화: 02-3016-5384 팩스: 02-3016-5201
이메일: ecfs@draju.com)

피 고 서울특별시 강서수도사업소장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 구 취 지

- 가.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은 급수공사비(원인자부담금) 총 429,035,000원의 부과 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 나.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은 급수공사비(원인자부담금) 총 429,035,000원의 부과 처분을 전부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마곡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 이라고만 합니다)의 사업시행자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은 총 429,035,000원 상당의 급수공사비(원인자부담금)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만 합니다)을 한 행정청입니다(갑 제1호 내지 6호증 각 공문 및 고지서 참조).¹⁾

2. 관련 법령

<별지2> 참조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가.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수도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수도시설을 신설·증설하였으므로 수도법 제71조에 의한 이 사건 부담금 부과사유가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별도로 위 사업지구 개별 건축행위에 대하여 위 부담금을 이중으로 부과하고 납부의무 없는 자에게 그 이행을 명한 것이어서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위법·무효입니다.

1)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처분 중 가장 빨리 이루어진 처분(2021. 8. 27.자)의 부과일(위 처분 통지서의 수령일은 2021. 8. 30.입니다)을 기준으로 계산하여도 90일 내에 이루어졌는바(갑 제3호증의1, 2 참조), 제소기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1) 피고는 이 사건 각 부과금액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이 사건 사업지구 밖의 취·정수장, 배수지, 송배수관 등 신설 및 증설된 수도시설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합니다) 제2조 제1호 가목, 제3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경우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 별표에 따라 계량기 구경별로 정해진 금액으로 이 사건 부담금이 산정됩니다.

- 2) 그런데, 이 사건 사업의 경우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협의로 원고가 해당 수도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부담하여 직접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의 상수도시설을 모두 설치하기로 하였는바,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의 상수도시설을 모두 설치하였습니다.

{ 다음 쪽 그림 삽입을 위하여 이하 여백 }

건축주에게 이 사건 부담금을 부과하여 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필요한 수도시설을 직접 설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개별 블록사업에 대하여 별도로 이 사건 부담금을 각 부과한 것입니다.

- 3) 관련 수도법 규정과 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하수도법 소정의 원인자부담금(타 행위자로 하여금 타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 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한 것)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사건에서 대법원은 동 원인자부담금의 제도적 취지가 타행위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하수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공공하수도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조성한 타행위자인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려는데 있다고 하면서,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그 처리에 필요한 공공하수도 공사비용을 부담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와 별도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8. 3. 20. 선고 2007두634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6849 판결). 이는 원인자부담금 관련 분쟁에 있어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입니다. 즉, 이 사건 사업지구처럼 전체 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원고가 해당 수도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와 별도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필요한 수도시설을 사업지구 내에 모두 설치하였는바, 그렇다면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부담금을

별도로 부담할 여지가 없습니다.

한편,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 의하면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는 것이지, 해당 사업과 관련된 모든 수도시설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즉, 이 사건 부담금은 수도공사(수도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조하는 공사. 수도법 제3조 제25호 참조)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원인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로서(수도법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 참조), 수도법 제71조 제1항은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도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인가가 부담하는 위 부담금은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필요한 수도공사가 있다면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이지, 그 필요한 수도공사 비용과 별도로 해당 사업 지구 용수 공급과 관련된 모든 수도시설에 관한 비용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대법원에서 최근에 확정된 사례(대법원 2015두38788 판결, 대법원 2019두46923 판결, 참고자료 2, 3)도 해당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필요한 수도시설을 설치하였지만 그 수도시설이 기존 수도시설과 연결되어 기존 수도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동일한 사안이었으나(서울고등법원 2014누45514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누61042판결, 참고자료 4, 5), 대법원은 당사자 협의로 사업시행자가 필요한 수도시설

을 설치하였거나 그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였으면 수도법 제71조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이행한 것이어서 부과사유는 소멸함에도 해당 사업지구 개별 건축행위에 대하여 기존 수도시설 이용에 관한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이중부과를 금지한 부담금 관리기본법 제5조 제1항¹²⁾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필요한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신설·증설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이와 별도로 이 사건 부담금을 부담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약 대법원이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필요한 신설·증설 수도공사비 외에 별도로 기존 수도시설 공사비까지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면 위와 같은 경우를 이중부과로 판단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관련사건에서 법원은,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원고가 동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필요한 수도시설의 신설공사를 모두 한 이상 신규로 설치한 수도시설이 기존 수도시설인 배수지와 연결되어 배수지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조례 제5조 제1항 제1호¹³⁾(이 사건 조례 제2조 제1호 가목과 유사한 규정)의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참고자료 5 내지 7).

2) 제5조(부담금 부과 원칙) ① 부담금은 설치목적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부과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나의 부과 대상에 이중으로 부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3) **고양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제5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 제2조 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 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정수장·배수지·가압장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 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한편, 대법원에서 최근에 확정된 사례(대법원 2015두38788 판결, 대법원 2019두46923 판결, 참고자료 2, 3)에서 대법원은 원고가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해당 사건 피고와의 협의를 통해 수도시설의 신·증설 등의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원인자부담금 부과 의무가 소멸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은 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지지 않는 자에 대하여 이행을 명한 것으로서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면서 피고와의 협의로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사업지구 내 수도시설의 신·증설 공사를 직접 시행함으로써 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가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담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처분은 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지지 않는 자에 대하여 이행을 명한 것으로서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하여 위법·무효라고 보아야 합니다. 즉,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필요한 이 사건 사업지구 내 모든 수도시설을 직접 설치하였으므로, 수도법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것과 동일하여 그 부과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별도로 위 사업지구 개별 건축행위와 관련하여 위 원인자부담금을 이중으로 부과하고 납부의무 없는 자에게 그 이행을 명한 것이어서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위법·무효입니다.

나. 이 사건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4조 제1항 [별표]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일부 개별 블록에 대하여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에 의한 이 사건 부담금은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실제 수도공사의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법합니다.

1) 피고가 밝힌 것처럼 이 사건 부담금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이 사건 사업지구 밖의 취·정수장, 배수지, 송배수관 등 신설 및 증설된 수도시설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과 같이 이 사건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별표에 따라 계량기 구경별로 정해진 금액으로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는 경우 이 사건 각 처분 금액뿐만 아니라 향후 개별 필지에 대한 건축행위가 있을 때마다 추가적으로 원고에게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사건과 같은 부담금의 합계액은 엄청난 금액으로 추정되고, 문제는 향후 개별 건축행위가 있을 때마다 추가적으로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담금액은 현재로선 확정할 수도 없는 금액이므로 조성원가에 당장 반영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사 백보를 양보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가 개별 필지에 대한 건축행위가 있을 때마다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 별표에 따라 계량기 구경별로 정액으로 산정하여 부과하는 이 사건 부담금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필요한 수도공사 비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즉, 앞서 본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 의하면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수도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이 사건 부담금 부과대상은 대규모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 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취·정수장, 배수지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부

담시키는 경우인바, 가사 백보를 양보하여 피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그 주장과 같은 수도공사(이 사건 사업지구 밖의 취·정수장, 배수지, 송배수관 등 신설 및 증설)가 필요하였고 이에 대한 이 사건 부담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경우 원고가 부담하는 이 사건 부담금은 실제 소요되는 그 수도공사 비용에 한정되는 것이지 그것을 초과하는 비용까지 부담할 근거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 별표에 따라 계량기 구경별로 정해진 일정한 금액으로 이 사건 부담금을 획일적으로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 별표(계량기 구경별로 정해진 금액)에 의한 이 사건 부담금 산정은 이 사건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사유 중 실제 수도시설의 신·증설 공사가 없었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실제 수도시설의 신·증설이 있었던 경우에 적용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3) 따라서, 가사 백보를 양보하여 피고 주장처럼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지구 밖의 취·정수장, 배수지, 송배수관 등 수도시설의 신·증설 공사가 필요하였고 이에 대한 이 사건 부담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4조 제1항 별표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일부 개별 블록에 대하여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에 의한 이 사건 부담금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실제 수도공사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 한편, 이 사건 서울시 조례 제4조 제1항 별표는 수도법령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새로운 부담금 부과요건을 창설한 것이어서 무효입니다. 따라서 위 무효인 조례 규정에 따라 인입급수관 공칭구경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

분도 모두 무효입니다.

- 1) 부담금관리기본법 제2조는 “부담금은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고, 동 별표에서는 수도법 제71조의 원인자부담금을 그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법 제4조는 “부담금 부과에 관한 법률에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설치목적, 부과요건, 산정기준, 산정방법, 부과요율 등(이하 “부과요건등” 이라 한다)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다만, 부과요건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 수도법 제71조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이 사건 조례에 의하여 그 부과요건을 규정하는 경우에도 위 수도법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것이며, 만약 그 위임 범위를 일탈한 경우 그 해당 조례 규정은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 2) 서울시 부담금 조례 제4조 제1항, [별표]상의 기준은 상위법령인 수도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수도법 제71조 제1항은 수도사업자가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는 수도공사 비용에 대하여 “그 수도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라고 정하고 있고, 수도법 제71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은 수도사업자가 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수도공사 등에 드는 비용을 산출하여 부담금을 낼 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수도법 제71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제3항에 따

르면 원인자부담금은 ①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비용, ②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드는 공사비, ③ 수도시설의 세척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④ 단수(斷水)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 ⑤ 도로복구비와 도로결빙 방지비용, ⑥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 ⑦ 그 밖에 홍보에 든 경비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제6항은 위와 같은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다시 위임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부분은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제3항에서 정한 각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 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 부담금 조례 제4조 제1항, [별표]는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이라는 제목 하에 구경별, 업종별 단가를 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제3항에서 정한 각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위와 같이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제3항은 부담금을 구성하는 비용 항목을 정함으로써 부담금 산정 기준을 정하고 있다 할 것인데, 서울시 부담금 조례 제4조 제1항 [별표]는 위 시행령 조항과 중복하여 부담금 산정 기준을 또 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 부담금 조례 제4조 제1항 [별표]는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제6항이 비용 산출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수도법 제71조 제1항,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제3항과 별도의

규율목적에 기하여 제정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즉, 수도법 시행령 제 65조 제6항은 어디까지나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제3항이 정한 기준에 따라 부담금을 구성하는 비용의 세부적인 산출 기준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는 취지일 뿐, 수도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2항,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제3항과 무관하게 부담금 산출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수도법 제71조 제1항은 수도사업자가 원인자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서울시 부담금 조례 제4조 제1항 [별표]가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부담금이 “수도공사에 필요한 비용 전부” 를 초과하는 수준이라면 위 조례의 조항은 관련 수도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라. 이 사건 처분은 강행규정인 도시개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반하여 무효입니다.

도시개발법 제55조 제1항 제1호는 도시개발구역에서 도로와 상하수도시설의 설치에 지방자치단체가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설치비용은 설치의무자가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조항은 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지를 분명히 표현한 것으로, 강행규정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참고자료 8 김상태,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기반시설의 비용부담에 관한 연구, 동아법학 제53호, 117~123쪽 참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6다69363, 69370 판결은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주축법’ 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 및 제3항[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 당해 지역에 가스를 공급하는 자는 해당 가스간선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그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은 그 설치의무자가 이를 부담한다고 규정]에 관하여, 위 규정은 가스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주체에게 부담시켜 주택 또는 택지의 수분양자들에게 그 비용을 전가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주택 또는 택지의 저렴한 공급을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복리향상에 필수적인 주거생활의 안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주축법 제36조 제1항, 제3항의 입법취지 및 그 규정 등에 따른 가스간선시설 설치의무의 내용과 성질, 그 밖에 앞서 든 주축법 제37조, 주축법시행령 제35조 제3항 등 관련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주축법 제36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은 적어도 위와 같은 통상의 규모와 설치방법에 따른 가스간선시설의 경우에는 가스공급자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와의 개별 약정을 통해 임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로서, 그에 위반한 행위를 단순히 금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사법상의 효력까지 제한함으로써 위반행위의 실현을 금지하려고 하는 효력규정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이 도시개발법은 공공재인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상하수도 시설의 설치 및 비용부담에 대한 의무를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가 부담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인자부담금의 형태로 원고에게 수도시설 건설비를 부담시키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강행규정인 도시개발법 제55조 제1, 2항이나 이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이나 공공주택지구사업 등 관련법의 강행규정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마.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이미 지출한 개발지구 내 상수도 설치비용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것으로 실제 수도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초과하는 것인바 수도법 제71조,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제3항에 위반됩니다.

1) 관련 법령

수도법 제70조에 의하면 급수설비를 제외한 수도의 설치비용은 수도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나,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도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에게 그 수도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수도법 제71조 제1항 참조).

수도법 제71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위와 같은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한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제3항에 따르면 원인자부담금은 ①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비용, ②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드는 공사비, ③ 수도시설의 세척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도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④ 단수(斷水)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 ⑤ 도로복구비와 도로결빙 방지비용, ⑥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 ⑦ 그 밖에 홍보에 든 경비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위와 같은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제6항 참조).

이 사건 서울시 부담금 조례 제2조는 원인자부담금을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유형은 위 조례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수돗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설 및 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입니다. 위 유형의 부담금은 다시 “대규모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 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취·정수장, 배수지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부담시키는 경우”와 “대규모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이외의 시설로써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기준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로 구분되며(서울시 부담금 징수 조례 제3조 제1항 제1, 2호), 서울시 부담금 징수 조례 제4조 제1항, [별표]는 두 가지 경우를 나누어 내경별로 가정용, 비가정용 부담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 부담금 조례 제12조 제1항은 “납부된 부담금이 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① 부담금은 “수도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범위에서 부과되어야 하는 것인 점(수도법 제71조 제1항 참조), ② 서울시 부담금 징수 조례는 납부된 부담금이 당해 조례에서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 비용과 부담금 간의 차액을 정산할 수 있는 조항 또한 두고 있는 점(서울시 부담금 조례 제12조 제1항 참조) 등을 종합해 볼 때, 부담금은 수도공사를 위하여 실제 필요한 비용을 기준으로 부과되어야 합니다.

2) 원고가 이미 지출한 개발지구 내 상수도시설 설치비용은 최소한 공제되어야 함에

도, 피고는 위 설치비용의 6배 수준의 부담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마곡도시개발지구 내에 자체 비용으로 상수도시설을 설치하여 관리청에 무상 이관하였으므로, 위 부분에 관하여는 수도공사를 위하여 별도로 지출되는 비용이 없는데, 이 사건 부담금 중 위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부분은 정산 또는 공제되어야 합니다(위 설치비용 관하여는 추후 관련 증거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설치비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설치비용보다 약 6배 가량 과다하게 산정·부과된 것인바, 실제 수도공사에 지출되는 비용을 초과하는 부담금의 지급을 명하는 것으로 수도법 제71조 제1항, 수도법 시행령 제63조 제3항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바. 이 사건 처분은 사전협의 없이 이루어져 수도법 제71조 제2항을 위반하거나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됩니다.

1) 관련 법리

수도법 제71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은 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법 제71조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수도사업자는 수돗물 사용량에 따라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원인가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원고와 미리 협의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합니다.

한편,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행정처분은 위법한데,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려면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두7343 판결, 2001. 9. 28. 선고 2000두8684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두6539 판결 등 참조).

2) 피고는 수도법 제71조 제2항에 따른 협의 당시 이 사건 부과 대상인 각 용지에 대하여 이 사건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령에 따라 원고는 피고 측(서울특별시 상수도 사업본부장)과 급수계획(용도별·인구별 구분에 따른 급수량) 및 설계도서(평면도, 배관상세도 등), 구관별 관경 등을 협의하였으나, 피고 측은 마곡도시개발지구 밖에 관하여는 수도시설의 신설 및 증설이 부담금 부과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한바, 당시 사업지구 밖 수도시설의 신설, 증설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사업지구 밖 수도시설의 신설, 증설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면, 피고 측에서 실시계획인가

단계부터 의견을 개진하고, 원고가 설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그러한 요청이 전혀 없었는바, 이 사건 지구의 경우 지구 밖 수도시설의 신, 증설은 아예 없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위와 같이 피고 측이 부담금 부과 의견 없이 협의를 완료한 것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위와 같은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있으며, 피고 측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원고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개발사업 추진 각 단계(개발계획·설계·시공)에서 피고 측과 수도시설 관련 협의 시 부담금에 대한 별도 의견이 없어, ‘서울특별시 측은 사업지구 밖 수도시설의 신설·증설이 필요 없다는 의견’이라고 판단하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성원가 산정 시 관련 비용을 반영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모두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피고는 기존에 개별 건축행위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는 판결로 인하여 원고와 사전 협의를 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 측의 사정일 뿐입니다.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은 법령상 부과 대상자를 잘못 판단한 피고의 잘못을 원고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부당합니다. 특히,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담금을 원고에게 부과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여 조성원가 산정 시 이 사건 부담금을 반영하지 못하였고, 현 시점에서 이 사건 부담금을 조성원가에 다시 포함시킬

수 없는바, 원고는 이 사건 부담금 전액을 모두 손해로 떠안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이 사건 지구에 부과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액수만 171억 원 상당입니다). 더욱이 이 사건 부담금은 수도 사용자가 신청하는 공칭구경에 따라 산정되기에 원고로서는 향후 원고가 부담해야 할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예상할 수 없으며, 사업 준공(2022. 12. 31. 예정) 이후에도 부담금이 계속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즉,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면 원고의 손해는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피고가 적절한 시기에 사전 협의를 하였다면, 원고는 위와 같은 손해를 입지 않았을 것인바, 피고의 절차 위반 내지 신뢰보호원칙 위반 행위는 매우 중대하다 할 것입니다.

사. 이 사건 처분은 소멸시효가 도과된 부담금의 지급을 명하는 것으로 위법합니다.

서울행정법원 1998. 12. 16. 선고 98구3845 판결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담금을 부과하는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고, 서울고등법원 2012. 9. 26. 선고 2012누 1619 판결 등은 개발이익환수법 제15조 제2항에 규정된 제척기간 도과 후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나아가 수원지방법원 2014. 4. 16. 선고 2013구합5402 판결은 법령에서 별도로 부과 제척기간을 두고 있지 아니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에 관하여, 위 부담금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 국가재정법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이라는 점, 기산점은 실시계획인가고시가 있었던 시점이라는 점을 전제로 부담금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판단한 바 있습니다.

수도법은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제척기간 등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인 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됩니다.

또한,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제2조 제1항 제2호),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수립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에는 인구수용계획, 토지이용계획 등을 통해 도시개발구역에 건축되는 건축물 등의 규모 및 용도가 예정되어 있다(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취득한 자가 주택 등의 건축물을 건축하였을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두40723 판결 참조).」라는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도시개발사업에 관하여 부과된 이 사건 부담금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 시점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가사 백보를 양보하여 피고가 계산한 이 사건 부과금액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인가고시는 2008. 12. 30. 이루어진바, 피고는 위 시점부터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할 수 있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처분은 위 시점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점이 역수상 명백한 시점에 부과 통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소멸시효가 도과된 부담금의 지급을 명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

다.

아.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무효이거나 적어도 취소되어야 합니다.

4. 피고에 대한 구석명사항

수도법 제70조에 의하면 급수설비를 제외한 수도의 설치비용은 수도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나,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에게 그 수도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수도법 제71조 제1항 참조). 또한 위와 같은 원인자부담금은 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수도법 제71조 제3항 참조).

위와 같이 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은 “수도공사” 내지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이라는 원인이 있는 경우에 부과되는 것으로, 그 금액은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비용”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조례는 위와 같은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담금의 액수를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① 실제로 피고 측에서 시행하는 “수도공사” 내지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이 있어 부과된 것인지, ② 위 “수도공사” 내

지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에 관하여 실제 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확인하는 것은 이 사건 처분이 ① 실제 수도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초과하여 부과되어 수도법 제71조,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제3항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② 피고가 이 사건 조례에서 인입급수관 공칭구경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수도법령을 위반한 것인지를 각 판단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 통지서의 내용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항들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이에 원고는 위와 같은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피고 측에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하여 석명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 ①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수도공사 내지 수도시설의 신설·증설의 구체적 공사 내용이 무엇인지.
- ②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수도공사 내지 수도시설의 신설·증설의 구체적 공사 시점이 언제인지.
- ③ 해당 수도공사 내지 수도시설의 신·증설에 소요된 실제 비용이 공사별로 각 얼마인지.
- ④ 이 사건 원인자부담금의 구체적 산출 근거나 요소가 무엇인지.
- ⑤ 이 사건 원인자부담금의 부과근거는 서울시 부담금 조례 제3조의 몇 항 몇 호에 근거하는 것인지.
- ⑥ 위 서울시 부담금 조례 제4조에 의하면, 부담금액은 별표에서 정한 산정기준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처분 시 적용된 별표에 따른 구체적 산정기준은 무엇인지.

⑦ 위 서울시 부담금 조례 제4조, [별표]은 제3조 제1항 각 호를 나누어 구경별, 용도별 원인자부담금을 정액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고, 제3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 적용되는 내경별 부담금은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 적용되는 내경별 부담금의 2~3배가량 높은데, 위와 같이 같은 항 제1호의 경우 적용되는 내경별 부담금이 더욱 높은 이유는 무엇인지.

⑧ 서울시 부담금 조례 제4조, [별표]에서 제3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 적용되는 내경별 부담금 산정 시 서울특별시의 가동설비자산 총액에 반영된 자산의 구체적 명세.

5.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용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의 1 2021. 8. 30.자 「급수공사 신청에 따른 급수공사비(원인자부담금) 부과 통보(마곡동 792-2번지 마곡지구 D24-3블록)」
2. 갑 제1호증의 2 갑 제1호증의1 첨부 고지서
3. 갑 제2호증의 1 2021. 8. 30.자 「급수공사 신청에 따른 급수공사비(원인자부담금) 부과 통보(마곡동 762-4번지 마곡지구 D9-2블록)」
4. 갑 제2호증의 2 갑 제2호증의1 첨부 고지서
5. 갑 제3호증의 1 2021. 8. 27.자 「급수공사 신청에 따른 급수공사비(원인자부담금) 부과 통보(마곡동 737-15번지 마곡지구 R4-3블록)」
6. 갑 제3호증의 2 갑 제3호증의1 첨부 고지서
7. 갑 제4호증의 1 2021. 9. 7.자 「급수공사 신청에 따른 급수공사비(원인자부담금) 부과 통보(마곡동 813-3번지 마곡지구 S-5블록)」
8. 갑 제4호증의 2 갑 제4호증의1 첨부 고지서
9. 갑 제5호증의 1 2021. 8. 30.자 「급수공사 신청에 따른 급수공사비(원인자부담금) 부과 통보(마곡동 792-7번지 마곡지구 D27-2블록)」
10. 갑 제5호증의 2 갑 제5호증의1 첨부 고지서
11. 갑 제6호증의 1 2021. 9. 3.자 「급수공사 신청에 따른 급수공사비(원인자부담금) 부과 통보(마곡동 812-0번지 서울식물원내 LG아트센터)」
12. 갑 제6호증의 2 갑 제6호증의1 첨부 고지서
13. 갑 제7호증 상수계획평면도

첨 부 서 류

1. 참고자료1. 대법원 2015두38788 판결
2. 참고자료2. 대법원 2019두46923 판결
3. 참고자료3. 서울고등법원 2014누45514 판결
4. 참고자료4. 서울고등법원 2014누61042 판결
5. 참고자료5. 의정부지법 2014구합9122 판결

6. 참고자료6. 서울고등법원 2016누34198 판결
7. 참고자료7. 대법원 2016두48423 판결
8. 참고자료8. 김상태,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기반시설의 비용부담에 관한 연구
9. 법인등기사항증명서(원고)
10. 소송위임장
11. 담당변호사지정서

2021.11.16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태경
남동환
오현정

서울행정법원 귀중

열람용

별지1

이 사건 처분의 부과 대상 및 금액

연번	부과대상	부과금액(원)	처분일	통지 수령일
1	마곡동 792-2(D24-3)	48,698,000	21.08.30.	21.08.30.
2	마곡동 762-4(D9-2)	167,814,000	21.08.30.	21.08.30.
3	마곡동 737-15(R4-3)	4,320,000	21.08.27.	21.08.30.
4	마곡동 813-3(S5)	2,247,000	21.09.07.	21.09.07.
5	마곡동 792-7(D27-2)	38,142,000	21.08.30.	21.8.31.
6	서울식물원(LG아트센터)	167,814,000	21.09.03.	21.9.6.
계		429,035,000		

별지2

관련 법령

수도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수도시설”이란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取水)·저수(貯水)·도수(導水)·정수(淨水)·송수(送水)·배수시설(配水施設), 급수설비, 그 밖에 수도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25. “수도공사”란 수도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조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68조(요금 등의 강제징수) ① 수돗물의 공급을 받은 자가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 또는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70조(수도 설치비용의 부담) 수도(급수설비는 제외한다)의 설치비용은 수도사업자가 부담한다.

제71조(원인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원인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이루 어지지 아니하면 수도사업자는 수돗물 사용량에 따라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1. 3., 2017. 4. 11.>

② 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수도공사 등에 드는 비용을 산출하여 그 금액·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1. 3.>

③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비용
2.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드는 공사비
3. 수도시설의 세척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4. 단수(斷水)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와 도로결빙 방지비용
6.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
7. 그 밖에 홍보에 든 경비 등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1. 3.>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이하 ‘서울시 부담금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와 수도시설의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 7., 2017. 1. 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 7., 2010. 7. 15.>

1.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돗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설 및 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제3조(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 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7. 1. 5.>

1. 대규모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 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취·정수장, 배수지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부담시키는 경우
2. 대규모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이외의 시설로써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제4조(부담금 산정기준)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구경별 업종별 부담금액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10. 7. 15., 2012. 12. 31.>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는 부담금의 50 퍼센트 범위 내에서 감면해 줄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소유주택인 경우에는 부담금의 전액을 감면해 줄 수 있다. <신설 2012. 12. 31.>

1. 연면적 45제곱미터 미만의 주거용 건물

2. 공용급수설비를 이용하는 주택 중 전용급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주택

제7조(부담금의 징수) 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시장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요청을 받거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총금액을 우선 부과·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우선 복구 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 1. 7., 2010. 7. 15.>

제12조(부담금의 정산) ① 납부된 부담금이 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 1. 7.>

[별표] <개정 2015.4.2.>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 제3조제1항제1호의 경우(대규모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구 분	가정용	비가정용
내경 15mm	864,000원	1,312,000원
내경 20mm	2,180,000원	2,247,000원
내경 25mm	3,688,000원	4,388,000원
내경 30mm	5,120,000원	8,185,000원
내경 40mm	6,749,000원	10,456,000원
내경 50mm	14,611,000원	23,314,000원
내경 65mm	-	38,142,000원
내경 80mm	-	48,698,000원
내경 100mm	-	84,597,000원
내경 125mm	-	167,814,000원
내경 150mm	-	219,750,000원
내경 200mm	-	462,767,000원
내경 250mm	-	1,044,423,000원
내경 300mm	-	1,350,830,000원
내경 350mm	-	1,729,460,000원
내경 400mm	-	2,340,437,000원

※ 내경구분은 인입급수관 공칭구경을 기준 한다. 다만, 주 수도계량기가 설치되는 단독주택(단독, 다중,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의 세대별 인입급수관은 15mm 구경을 적용한다.

※ (이하 현행과 같음)

○ 제3조제1항제2호의 경우(대규모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이외)

구 분	신 설	개 조
내경 15mm	327,000원	산·구 구경별 원인자부담금 차액 징수. 다만, <u>신·증축을 제외한 기존 단독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에</u>
내경 20mm	916,000원	

내경 25mm	1,473,000원	<p><u>따른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을 말한다</u>의 인입급수 관 구경변경인 경우에 한하여 징수 면제</p>
내경 30mm	2,618,000원	
내경 40mm	4,418,000원	
내경 50mm	6,774,000원	
내경 65mm	12,369,000원	
내경 80mm	16,427,000원	
내경 100mm	28,011,000원	
내경 125mm	45,059,000원	
내경 150mm	61,028,000원	
내경 200mm	86,682,000원	
내경 250mm	116,918,000원	
내경 300mm	140,994,000원	
내경 350mm	177,487,000원	
내경 400mm	193,161,000원	

※ 내경구분은 인입급수관 공칭구경을 기준 한다. 다만, 주 수도계량기가 설치되는 단독주택(단독, 다중,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의 세대별 인입급수관은 15mm 구경을 적용한다.

※ (이하 현행과 같음)

끝.